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별지 제2호서식	□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결과 통보 (복지지원과-39359호 (2023.10.13.))]	□ 별지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561호

가) 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제출 1건(고성군 보건소)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1항제1호에 기타 예방접종 지원은 로타 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폐지로 삭제

입법 예고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하생략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u>기타 예방접종지원</u> ,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하생략.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선택 예방 접종에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무료로 예방 접종(2023.3.6.)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보건행정과-20962호 (2023.11.2.))]	- 반영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하생략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하생략.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서: 붙임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인구증가 신규시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예방접종 지원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접종 전환으로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여 기타 예방접종 지원을 삭제하고 별표의 해당 내용을 삭제함.
 - 전입세대 주택개량 용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지원 폐지(안 제3조제1항제5호)
 - 별도의 사업지침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폐지·미시행 사업 정비 필요에 따른 내용 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신규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둘 경우 2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하여 결혼 장려와 인구증가를 유도함.
 -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충족 시 6개월 이내 신청 규정 폐지(안 제4조)
 - 민원24 전입신고 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미신청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읍면장은 전입신고 접수 시 본 조례에 따라 전입축하금 외 다른 지원내용도 안내하여야 하므로 신청 기간 폐지와 함께 민원24 전입신고 시의 안내 방법을 달리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입근로자 전입 지원금 지원 횟수 기재(별표)
 - 재전입 등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횟수 제한은 적절함.

-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증가 신규시책인 결혼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별도로 지원 자격을 정하는 사업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23. 11. 28. 원안가결